

제 호

체육시설업 등록증

- 상호:
- 영업소 소재지:
- 성명(대표자): (생년월일:)
- 업종: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
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시설설치 내용

변경등록	처리일	기록자 (서명 또는 인)
변경내용 및 그 원인		